



제목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방법

1. 산업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 (120억 원 미만) 9인의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시, 예를 들어 사업주 측 인원이 3명밖에 안되면 근로자 측도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되는지요?
2. 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현장은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해야 되는지요?
3. 산업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3항에 의한 건설업 도급사업에 있어서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 시 안전 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석시켜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는 몇 명을 이야기 하는지요?
1.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이며, 동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와 사용자위원으로서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 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합니다.

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기준의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 분야의 인력으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이 해당되는지요?

귀하가 졸업한 재료공학과에 대한 전공내용 등의 자세한 언급이 없어 세부적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재료공학은 재료의 물리적·화학적·기계적 성질을 서로 연관시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재료의 결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므로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은 지정교육기관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강사요원으로 운영되는 기술분야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제조업의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 바, 1명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자체선임 하였다면, 나머지 1명은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요? 또 나머지 1인을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선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 대행계약서상의 상시근로자수는 500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인 250명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야 하는지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의거 제조업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2인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1인과 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대행사업장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사업장 내에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및 별지 제3호의2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의거 체결된 근로자 수를 당해 사업장의 대행 근로자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특칙으로 대행 근로자 수를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건물 내에 석면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석면의 유해성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건물의 직원들 근무처소 및 숙직실 등의 공사에 석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또 공사시공자가 석면을 사용하는데 왜 석면을 사용하는지, 석면이 인체에 어느 정도 나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중 백석면에 대해서는 제조·사용 시 허가(제38조)를 받아 사용될 수도 있으나 백석면보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청석면, 갈석면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용 등이 금지(제37조)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의 노출기준은 0.1개/cm³이며 석면의 제조·사용 등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석면을 흡입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허용소비량의 해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관련 작업장 체적을 감안한 허용소비량이 10g이고, 10명이 하루 총 1시간 미만으로 관리 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며, 10명이 하루 사용하는 양을 모두 합한 것이 30g인 경우, 허용소비량 초과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허용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허용소비량(g/hr) = 작업장체적/15」입니다.

귀하가 체적을 감안하여 계산한 허용소비량 값이 10g/hr로 계산되었다면 하루 8시간 동안은 80g/day이며, 만약 8시간 동안 사용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총량이 30g/day라면 허용소비량 미만이라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